

#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2,952,367	7,888,571
일반회계	246,027,524	7,380,826
특별회계	16,924,843	507,745
기타특별회계	16,924,843	507,7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0,051	43,802
의료급여특별회계	652,582	19,577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287,870	8,636
주택사업특별회계	181,000	5,43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26,000	3,78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836,439	85,093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7,184,105	215,523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75,000	74,25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699,610	50,988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2,186	666

제 2 조 세입·세출의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926,83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